

경영위원회 규정

(Management Committee)

2026. 2. 19

삼성물산주식회사

목 차

제 1 장 총 칙	
제 1 조 【목적】	1
제 2 조 【적용범위】	1
제 3 조 【권한 및 기능】	1
제 2 장 구 성	
제 4 조 【구성】	1
제 5 조 【위원장】	1
제 6 조 【관계인의 의견청취】	2
제 3 장 회 의	
제 7 조 【개최】	2
제 8 조 【경영위원회의 소집】	2
제 9 조 【결의방법】	2
제 10 조 【통보의무】	3
제 4 장 부의사항	
제 11 조 【부의사항】	3
제 5 장 기타사항	
제 12 조 【의사록】	5
제 13 조 【간사】	5
제 14 조 【규정의 개·폐】	6
〈 부 칙 〉	6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【목적】

본 규정은 삼성물산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고 한다)의 정관 제 28 조의 2, 3 및 이사회규정 제 14 조에 근거하여 경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【적용범위】

경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 3 조 【권한 및 기능】

- ① 경영위원회는 이사의 규정 및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,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.
- ② 경영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사안에 관한 회사의 업무 집행에 대하여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 【구성】

경영위원회의 위원은 사내이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, 2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한다.

제 5 조 【위원장】

- ① 경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- ②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선임 대표이사로 한다.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사장, 전무의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제 6 조 【관계인의 의견청취】

경영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3 장 회 의

제 7 조 【개최】

경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8 조 【위원회의 소집】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고,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집 통지 기간을 늦어도 24시간 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회의의 연기나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 9 조 【결의방법】

- ① 경영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이 경우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, 기타 유사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여 경영위원회를 진행할 수 있다.

- ② 경영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은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 【통보의무】

- ① 경영위원회는 결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결의일로부터 2 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경영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 단, 결의사항을 통지받은 이사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는 경영위원회 결의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- ② 경영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경영위원회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 4 장 부의사항

제 11 조 【부의사항】

- ①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 중 이사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,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중요한 경영사항으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경영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한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 한다.
 - 1.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
 - 1) 중요한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 - 2)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

- 3) 지점 및 법인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 (단, 특수목적형법인은 제외)
- 4)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 및 정책
- 5) 자기자본 0.1% 이상의 기술도입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·기술제휴
(자기자본 = 자산총액 - 부채총액 ±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신고·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, 최근 사업연도말 사업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기준, 이하 같다)
- 6) 자기자본 0.1% 이상의 신물질·신기술관련 특허권 취득, 양수, 양도
- 7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.5%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의 생산 활동의 중단 또는 폐업
- 8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.5% 이상에 상당하는 제품의 수거, 파기
- 9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5%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단일계약의 수주 또는 체결
- 10)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2.5%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 단일판매 대행 또는 공급계약의 체결·해지

2. 재무 등에 관한 사항

- 1) 자기자본 0.1% 이상 유무형자산의 취득, 처분 (거래금액 기준)
- 2) 자기자본 0.1% 이상 자기자본 2.5% 미만의 차입계약 체결
- 3) 자기자본 0.1% 이상 자기자본 1.5% 미만의 타법인 출자, 출자지분 처분
- 4) 자기자본 0.1% 이상 자기자본 1.5% 미만의 해외 직접투자
- 5) 자기자본 0.1% 이상 자기자본 1.5% 미만의 담보제공, 채무보증, 채무인수, 채무면제 (건설 수주관련 이행보증, 주택 조합사업비 지급보증, 책임준공 확약은 제외)
- 6) 투자,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합계가 자기자본 0.1% 이상 자기자본 1.5% 미만인 타법인 출자 및 해외직접투자 (투자는 Risk 를 총량개념으로 관리)
- 7) 자기자본 0.1%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
- 8) 자기자본 0.1% 이상의 가지급 또는 대여

- 9) 건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기부, 후원, 협찬 등을 목적으로 한 일체의 경제적 이익 제공 (금전·현물 제공 및 유무형 자산 사용, 사용편의 제공도 포함) 단,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원금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심의
- 10) 기타 기준금액에 상관없이 백지수표의 발행, 증권거래소 공시 또는 외부기관으로 위원회 의사록 제출이 필요한 모든 재무 사항
- 11) 상기 2) 내지 6), 8) 내지 9)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안에 대해 2회 이상 분산 집행 또는 증액되어 누적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
- 12) 상기 3) 내지 6)과 관련하여 투자형식의 사업개발을 위한 사전비용, 자원 탐사비용은 제외

3. 기타 부의사항

- 1) 중요한 소송의 제기과 화해에 관한 사항
- 2) 이사회가 수시로 위임한 사항
- 3) 기타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으로서 경영위원회가 부의하기로 결정한 사항

제 5 장 기타사항

제 12 조 【의사록】

- ① 경영위원회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경영위원회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,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간사가 보관한다.
- ③ 의사록은 이사회에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13 조 【간사】

- ① 경영위원회에는 간사를 두고, 이사회 의장이 정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경영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한다.

제 14 조 【규정의개·폐】

이 규정의 개·폐는 이사회회의 결의에 의한다.

〈 부 칙 〉

1. 이 규정은 2012년 04월 16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14년 08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5년 09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4. 이 규정은 2016년 03월 1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5. 이 규정은 2016년 0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6.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7.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8. 이 규정은 2022년 04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9. 이 규정은 2025년 03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10. 이 규정은 2026년 02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다만, 제 11조 제 2항 중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관련 개정사항은 2026년 0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